



행복여는미래. 더불어누리는 **연수**

2019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



연 수 구
기획예산실

2019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

- ❖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투자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확대
- ❖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

I. 재정여건 및 전망

1 세입전망

- 경제성장 및 세입확충 노력으로 세입은 금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 (자체재원) 송도동의 아파트 신규분양 등 지방세 수입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 전망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세입여건 개선으로 증가 예상
- (보조금등)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지속적 증가 예상

2 세출전망

-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정책의 적극이행, 국가·인천시 정책과제 연계를 위한 재정수요 증가 전망
-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정책 이행을 위한 신규 재정수요 증가 전망, 중장기 사업의 기반 구축 및 주민 숙원사업의 성과극대화 등 재정적 뒷받침 필요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구비 부담 증가 전망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의 지출수요 상승
-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현·확산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악취 등 환경위해요소 적극 대응 등 안전관련 투자 확대 전망

II. 2019년 예산편성 기본원칙

1

세입예산

지방세 : 세목별 특성에 따라 세수신장률 등 반영·추계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경제 영향도(정부부동산정책, 부동산 거래동향 등)를 면밀히 검토 후 징수 가능한 지방세 수입액을 계상하고, 관련 법령 개정 시 법령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요인을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
- 경제성장을, 내국세 증가율 등 거시경제 지표 반영

세외수입 : 세수 확충방안 적극 반영

- 과징금·변상금·가산금 등은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대책 마련
- 사용료, 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 추진
- 유희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확충,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수익성 제고
- 세외수입 체납액 근절대책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예산

- 국·시비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등 외부재원 확보 노력
- 국·시비 보조 신청사업 중 확정 내시된 사업비 요구
 - ※ 성과미흡 연례·반복사업 신청 지양, 현안사업 및 시민복지 증진사업 국비 적극 확보
- 미확정된 보조사업은 반드시 관계부서 확인 후 보조 가능한 범위 내 요구
 - ※ 보조금 미 교부시 해당사업 구조조정
-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사업 적극 발굴
- 세입관련 세출경비는 세입과 연동 편성

□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정책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 민선7기 공약사업, 주요정책의 적극 이행 및 국가·인천시 정책과제 연계를 통한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 중장기 사업의 기반 구축 및 주민 숙원사업의 성과극대화를 위한 재정역량 집중
-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분야별·주제별 토론회 등 외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편성 요구
 - ※ (의견수렴의 범위) 신규 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등
 - ※ (우선순위) 공약사업·정책사업 → 일반사업 순으로 편성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사업타당성, 효과성, 비용추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의거 요구하되,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 편성
- 민간부문과의 합리적 역할분담, 다양한 재원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여 투자 여력 적극 확충
- 투자사업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고 엄격한 투자심사 실시
- 재정수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획예산실과 재정사항 협의(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사전절차 이행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주요 사업편성 과정까지 주민 참여확대
- 일반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 정비
-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 충실 작성
 - ※ 주민참여예산 실행계획 별도 수립·통보

III. 예산안 작성 지침

1

기준경비 한도 내 편성요구

- 한도액 배분대상 통계목에 해당되는 경비는 반드시 한도 내 요구
 - 지방의회관련 경비(4개 통계목) : 총액한도 내에서 요구

- 대상통계목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총액한도 산정방법

$$\{ \text{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times (1 + 0.297) + \text{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times (1 + 0.176) \} + \text{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times (1 + 0.05) + \text{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times (1 + 0.297) \}$$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는 2019년도에 한하여 의원 1인당 0.8백만원 범위에서 한도 조정 가능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18년 수준에서 소요액 요구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2)에 따라 '18. 8월말 현재 공무원 총정원수 기준'으로 정원구간별 누적인원에 해당하는 1인당 연간금액으로 산정 요구 ('18년과 동일)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2)에 따라 기준금액을 요구하되, 무기계약직(공무직), 청원경찰, 파견자 포함 산정
다만, 파견자 소속기관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요구시 정원에서 제외하여 요구
※ 실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지가 다른 지역(읍·면·동)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기준액 적용
- 특정업무경비 : '18년 수준에서 소요액 요구('18년 재정계획심의회 기 의결확정)

- 지방보조금 : '18년 수준에서 소요액 요구하되, 지방보조금 예산운영 원칙 준수

- 대상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운영 원칙 준수 요구

- 사무관리비, 여비 : '18년 수준에서 부서 한도액 범위 내 요구하고, 월액여비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요구
※ 2019년도 부서별 기준경비 한도액 별도 통보(기획예산실)

□ (신규사업) 사업추진 필요성과 재원대책 마련 동시 제시

- 2019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점검 후 세출예산 요구
-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분야별·주제별 토론회 등 외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편성 요구
-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지출의 증가분만큼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Pay-go)을 동시에 제시
-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하여는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보조사업 이외의 재정사업은 기존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사업수를 일정수준에서 관리 (one-in, one-out 관리)

□ (기존사업) 사업의 효과성 등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요구

- 정책사업 내 일반운영비 등 경상 경비는 전년예산액 그대로 요구하거나 대강의 증가액을 요구하는 사례는 지양
-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라도 객관적인 전년도 사업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예산액 요구

□ 건설 및 건축사업

- 건설 및 건축관련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가용재원 상황을 고려 추진시기 조정
-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기본·실시 설계 시 주민,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로 사회·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 출자 또는 출연사업

- (출자금)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 (출연금)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 이행

□ 보조사업

-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한정
- 단체에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상 및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지원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요구
- 계속지원 사업의 경우 존치평가(일몰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 계속사업

- 사전절차 이행,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보상비, 설계비 등 순차적 계상
- 토지수용 등 당해 연도 내 법적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
- 계획수립부터 준공 시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연도별 집행가능 범위 내 편성
-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위주의 예산편성: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

3

기 타 사 항

-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관련규정 준수
- 재정사항 합의절차 이행 철저(재무회계규칙 제22조)
- 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철저 **[붙임] 예산편성 사전절차**
 - 기본방침, 사업계획서 등 사전 방침 수립
 - 물품(정수책정), 자산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과제 등(심의)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지방재정 투자심사
 - 행사성 사업 사전심의
 - 지방보조금 사전심의 등
- 기한 내 예산요구 및 설명·보완자료 미제출 시 “미 요구, 요구내역 철회”로 처리예정 → 제출기한 준수

IV. 예산편성 및 실무심사 일정

1

예산편성 일정

※ 주민참여예산 실행계획 별도 수립

1 예산편성 교육 및 편성요구

○ 예산편성 지침시달 및 교육 9. 6. 10:00

○ 사업예산 구조화 및 예산요구서 입력·제출 9. 6. ~ 9.17.

※ 부서별 e-호조시스템 예산요구 입력 후 공문발송

[이호조 예산요구서 PDF파일, 실무심사자료(별지1~3) 제출]

2 예산(안) 심사 및 조정

○ 예산요구서 서면 심사 9.18 ~ 9.19

○ 예산요구내역 및 재원판단 보고(1차) 9.20.한

○ 예산요구서 실무 심사 및 조정 9.21. ~ 10. 5.한

○ 예산안 실·국별 토론회 10. 1. ~ 10. 5.한

○ 추가 심사 및 보완 10. 8. ~ 10.10.한

○ 예산요구(조정)내역 및 재원판단 보고(2차) 10.12.한

○ 사전심사 심의자료 제출 10.19.한

※ 보조금 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행사성 사전심사, 용역심의 (별도 공문)

3 예산(안) 확정

○ 국·시비 보조금 확정결과 조정(최종) 10.22.한

※ 국고보조금 통지(중앙→시) '18.10.15.한

○ 예산안 최종 보고회 11. 2.한

○ 예산안 사전심사 위원회 개최 11. 7.한

○ 예산편성결과(확정) 보고 11. 9.한

4 예산(안) 의회 제출 11. 12.한

2

부서별 실무심사 담당자 지정

- 예산담당 배종욱 : 총 괄
- 담 당 자 정경미 :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국
- 담 당 자 양만상 : 기획예산실, 도시환경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 담 당 자 노신균 : 복지경제국, 기금, 공단(총괄)
- 담 당 자 신정원 :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연수청학도서관
- 담 당 자 이재현 : 동 주민센터

V. 예산요구서 및 관련서류 작성 제출

1

예산요구서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제9조에 의거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방침을 득하고 세입세출요구서를 실·단·국·소·관장 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 하되 e-호조시스템에 입력 후 공문발송
- 요구서 제출시기 : 2018. 9. 17일까지
 - ▶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은 2018.10.22.일 한 확정 내시액 최종 제출

2

서면심의 자료제출

- 별지1호~3호 서식
- 관련 법적 근거(법령 및 조례 사본)
- 사업 계획서(구청장 결재) 및 견적서
- 보조금 (가)내시서

- 붙임 1. (참고) 지방예산과정 1부.
2. 서면심의 자료 각1부.
3. 연수구 예산편성 운영기준 1부. 끝.

참 고

지방예산과정

계획수립단계(사전절차)		예산편성단계	예산집행단계	결과분석단계
<p>지방재정영향 평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총사업비 30억원이상 경기대회·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100억원이상 지방비 50억원이상 신규 공모사업 ○ 심사시기, 제출기한 : 투자심사 일정과 동일 	<p>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법 제3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세부사업 행사성 사업은 1억원 이상 5회계연도 중장기 계획 수립(예산안 첨부서류) ○ 심사시기 : 10월~11월 ○ 제출기한 : 9. 21.한 	<p>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7월말 - (연 수 구) 9월초 	<p>예산배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6조)</p> <p>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p>	<p>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제도 (지방재정법 제32조의7)</p> <p>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p>
<p>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 ○ 시(중앙)심사시기 : 3, 6, 10월말까지 ○ 시(중앙)제출기한 : 1, 4, 8월 15일한 * 자체심사 : 10.19.한 안건제출 	<p>지방보조금 심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지방보조금 12개 과목 ○ 심사시기 :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11.7.한) ○ 제출기한 : 10.19.한 		<p>②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 8~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가내시 : 10월 15일한 	<p>성립전 예산 (지방재정법 제45조)</p> <p>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성립 이전에 사용</p>
<p>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 심사시기 : 60일 이내 ○ 제출기한 : 4월말, 수시 	<p>용역과제 심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2천만원이상 학술·조사·연구·계획·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 ○ 심사시기 :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11.7.한) ○ 제출기한 : 10.19.한 	<p>③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11월 11일한 (회계연도 시작 50일전) - (군구) 11월 21일한 (회계연도 시작 40일전) 	<p>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p> <p>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계상,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 계상 가능</p>	<p>재정분석 (지방재정법 제54~55조)</p> <p>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에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p>
<p>재정사항 합의제도 (재무회계규칙 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에 대한 사전합의 ○ 심사시기 : 기본방침 수립 이전 ○ 제출기한 : 수시 	<p>신규행사축제 사전심사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신규 행사 축제사업(4개 과목) ○ 사전심의 :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11.7.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제출기한 : 10.19.한 	<p>④ 예산안 심의·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12월 16일한 (회계연도 시작 15일전) - (군구) 12월 21일한 (회계연도 시작 10일전) 	<p>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p> <p>승인권자 : 명시이월, 계속비(의회), 사고이월(자치단체장) 요구 :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 확정 : 회계연도 완료후 30일 이내</p>	<p>결산 (지방자치법 134조)</p> <p>결산안작성 : 다음연도 3.21 (출납폐쇄 80일전) 결산검사 : 다음연도 5.10한 의회제출 결산승인 : 제1차 정례회</p>
		<p>⑤ 예산의결결과 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 후 3일 이내 (의회→단체장) 		

(별지1)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세 입 명

※ 목별로 작성, '18예산은 당초예산기준

< ○○회계 >

(단위 : 천원)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요구 (B)	증감 (B-A)	
					%
○ 사업명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수입의 출처, 부과기준(율), 납기일정 등
- 법적 근거 ※ 근거 법령 기술
- 산출 근거 ※ 물량 * 단가 등 계량화하여 작성

□ 징수실적

- 연도별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구분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사업명 (전년대비 증가율)								

※ 예산은 당초 예산액 기준, 결산은 결산액으로 작성

□ 목표액 조정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담당자 >

부서명	직급	성 명	전화번호	비고

세부사업명(신규/계속)

<○○ 회계>

(천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안) (B)	증 감 (B-A)
○ 사업명		※ 2회 추경예산 까지 반영		

1. 사업목적

○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령, 공약 등 구체적인 조문 및 공약내용 등 기술

○ 추진경과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3. 사업내용

○

※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절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등

4. 2019년 예산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

○

※ 구체적인 요구내역 기재

※ '18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 상세히 기술

5. 지원 필요성

○

< 사업담당자 >

부서명	직급	성 명	전화번호	비고

※ 붙임 사업 계획서 및 견적서

6.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 위치도나 현장사진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첨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대상 및 완료 여부 파악 제출 의무화 > (예시)

재정사항 합의				의견수렴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	비대상	이행	미이행	대상	비대상	실시	미실시	대상	비대상	반영	미반영
용역과제 심의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비대상	이행	미이행	대상	비대상	실시	미실시	대상	비대상	반영	미반영

※ 중기지방재정계획 : 모든 세출예산 편성 요구 사업이 반영 대상임

(별지2) 출연·출자기관, 시설위탁기관(공기업+민간) 예산 설명자료

기관명 : * 출연·출자기관, 시설위탁기관(공기업+민간)

□ **세입예산 (서식 1)**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산출기초	2017 결산액	2018 예산 (A)	2019 예산(안) (B)	증(△)감	
장	항					세	목
예산총액							
사업수익							
영업수익							
자체사업수익							
사업운영수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예금이자수익							
출자출연금수익							
출연금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기타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자본적수입							
자본금수입							
자본금							
자본금수입		자체 기금출연금					
자본잉여금수입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 **적립기금현황 (서식 2)**

기금명	적립목적	'18년도말 조성액(A)	'19년도 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E=A+D)	비고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 세출예산 (서식 3)

(단위 : 천원)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안)		증(△)감	
			기관안(B)	부서검토안	(B-A)	%
합계						
□ 기관운영비						
○ 인건비						
○ 경상경비						
□ 주요사업비						
○ 기관목적사업						
〈기관고유임무형〉						
-						
〈부서임무형〉						
-						
□ 특수사업비						
○ 시설비						
-						
○ 차입금상환						
-차관원리금상환						
-외환대출원리금상환						
○ 기타 특이사항						
-						

※ 작성요령

1. (서식1) 세입예산 기준 '17년 결산, ' 18년 당초예산, '19년 예산안 및 비교증감 작성
2. (서식2) '18년도말 조성액(예측), ' 19년도 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예측) 작성
- 3 '17년 결산, ' 18년 당초예산, '198년 기관안 및 부서검토안 작성
- 4 기관목적사업
 - 기관 고유임무형 : 출자·출연기관설치 근거법령에 의한 고유 목적사업
 - 부서 임무형 :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시에서 부여한 임부
5. 특수사업비 : 시설개보수 관련 시설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 6.(서식1~3) 세부사업별 경비성질별 예산요구내역서 별도 제출

< 사업담당자 >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비고

